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 재 봉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23-145 발의연월일: 2023. 11. 10.

발 의 자:정재봉,이종숙,신찬호,강선영,

이충현, 한상욱, 김현진, 홍재희,

고찬양, 조기만, 김희동, 김성한,

박성호, 전철규

1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「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」의 과제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서 지역제한 문구인 "서울특별시"를 삭제함(안 제2조 제3항, 제3항제2호)
- 나.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요건인 서울특별시 거주와 근무지 요건을 삭제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3조

나. 협조부서 : 의회사무국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0. ~ 2023. 11. 1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"을 "다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"를 "정부 및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①・②	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	3
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<u>서울특</u>	<u>다음</u>
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	
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을 선임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	2. 정부 및 정부기관, 지방자치
<u>자치구</u> 에서 예산·결산 관련	단체
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	
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	
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	
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	제4조(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
임)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	임) ①
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자	
격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장은	
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	
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	
1.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지역으	<u><삭 제></u>

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<u><신 설></u>

<u>2</u>. · <u>3</u>. (생 략)

 4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

 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

 ② ~ ④ (생 략)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 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

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<u><삭 제></u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3조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·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